

경기도 공고 제 2026-5820 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공고

경기도 공고 제 2026-5337 호(2026. 3.10.)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의 변경 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 년 7 월 2 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 분 내 용		근거법령 및 변경 사유
			변경 전	변경 후	
(주)나이테크건설 (이미경)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-18 , 지원상가동 301호 수원 종합공구단지 (고색동)	건축공사업 (10-3949)	영업정지 5개월 (2026.3.12.~ 2026. 8.11.)	영업정지 4개월 15일 (2026.3.12.~ 2026. 7.26.)	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대표자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